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5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총 괄	5
(1) 제정안의 입법취지	5
(2) 제정안의 구성체계	11
2. 조문별 검토의견	13
(1) 목적 및 정의	13
(2)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16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4)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19
(5)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24
(6) 제조·수입 등의 금지	26

(7)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금지 및 조치명령 등	30
(8)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등	35
(9)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7
(10)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저감기술 지원 등	40
(11) 자료제출·검사, 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과태료	4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4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

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그 발생 방식에 따라 1차·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호).

나.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주민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

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함(안 제10조제1항).

사.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함(안 제10조제2항).

아.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하천·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일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폐기물일 때에는 해양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수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차.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리·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제5항).

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미세
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
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미세플라스
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IV. 검토의견

1. 총 괄

(1) 제정안의 입법취지

최근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이나 사람의 식품 사슬에 흡수되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1월1일 시행)을 통해 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화장품법」 및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현황]

구분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사법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대상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면도용 제품, 클렌징 제품, 마스크 팩, 손발 피부연화제 등 씻어 내는 제품	○구 중 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
정의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제정일	'20. 6. 5	'17. 1. 11	'17. 5. 19
시행일	'21. 1. 1	'17. 7. 1	'17. 5. 19
주관부처	환경부	식약처	식약처

자료: 환경부

또한 세계 각국에서도 5mm 이하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개인미용용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점차 확대¹⁾되고 있

1) [세계 각 국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현황]

국가	법령	내용
뉴질랜드	2022 폐기물 최소화(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규정(Waste Minimisation (Plastic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22), 2008 폐기물 최소화법(Waste Minimisation Act 2008)	2022년 10월 1일부터 일회용품 및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 금지
독일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일회용플라스틱 금지령(Einwegkunststoffverbotsverordnung)	2021년 7월 3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재사용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 제공 등
일본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별수집 및 재활용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플라스틱과 관련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등	2022년 4월부터 3R(Reduce, Reuse, Recycle)+Renewable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라스틱자원순환촉진법 시행, 특정플라스틱사용제품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위한 기준 마련, 시정 조치 이후 벌금형 도입 등
중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中華人民共和國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2020년 9월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나, 해외의 경우 의도적(1차) 미세플라스틱 중 일부(주로 세정제, 화장품에 한정)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과 비의도적(2차)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입법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세계 각국의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

구 분	미국	프랑스	대만	영국	캐나다
대상	씻어내는 화장품(치약포함)	씻어내는 화장품(치약포함)	개인미용용품	화장품, 개인미용용품	화장품, 개인미용용품
정의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고체 플라스틱 (크기 규정 없음)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제정일	'15.12.28	'16.8.8	'16.8.23	'18.1.9	'16.11.5
시행일	'17.7.1.	'18.1.1.	'18.7.1	'18.7.1	'18.1.1
주관부처	식약청(FDA)	환경에너지 해양부	환경부	환경식품농촌부	환경부

자료: 환경부

특히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民共和國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등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 △소비자 재활용 컵 사용 시 할인 가격 책정, △티백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 △3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공공장소에 음수대 설치, △1.5kg 이하의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 등의 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당에서 일회용 접시 사용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영수증의 인쇄를 금지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첫째, 미세플라스틱 정의와 관련하여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미세플라스틱을 모든 치수가 $0.1\mu\text{m}\sim 5\text{mm}$, 길이가 $0.3\mu\text{m}\sim 15\text{mm}$, 길이-지름 비율이 3 이상인 고체 폴리머 함유 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나노플라스틱은 $1\mu\text{m}$ 이하, 미세플라스틱은 $1\mu\text{m}\sim 1\text{mm}$, 대형미세플라스틱은 $1\sim 5\text{mm}$ 로 정의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 사례나 정확한 규명이 없어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①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²⁾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³⁾, 제13조⁴⁾ 및 제14조⁵⁾에 따라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해안, 부유, 침적폐기물의 수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 「물환경보전법」 제31조⁶⁾ 및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면관리자 및 시·도지사 등은 플라스틱, 폐비닐 등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홍수 전·후 집중 수거·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해양, 하천 및 호소로의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규정하려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미세플라스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명확한 위해성을 근거로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사용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방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수입 금지 규정 신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 위원회 신설 보다는 기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6조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 안 제18조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의 업무와 역할이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다음과 같이 총 21개조의 보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제3조~제6조)는 국가·지자체의 책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계획 수립 등’(제7조~제9조)은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방안’(제10조~제18조)은 미세플라스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유출금지,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실태조사의 실시,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저감기술의 도입 지원, 연구·관리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며,

‘자료제출·검사, 과태료 등’(제19조~제21조)은 미세플라스틱 관련 자료 제출·검사, 권한의 위임과 위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목적 및 정의	▪ 목적(§1) ▪ 정의(§2)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 사업자의 책무(§4) ▪ 국민의 책무(§5) ▪ 다른 법률과의 관계(§6)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계획 수립 등	▪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7) ▪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8) ▪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9)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방안	▪ 제조·수입 등의 금지(§10) ▪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금지(§11) ▪ 미세플라스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등(§12)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등(§13) ▪ 실태조사의 실시 등(§14) ▪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제협력(§15) ▪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16) ▪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도입 지원(§17) ▪ 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 지정 등(§18)
자료제출·검사, 과태료 등	▪ 자료제출·검사 등(§19) ▪ 권한의 위임과 위탁(§20) ▪ 과태료(§21)
부 칙	▪ 시행일(§1) ▪ 준비행위(§2)

2.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안 제1조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해를 예방함으로써”를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는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와 관련하여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말하고, 1차 미세플라스틱은 특정한 기능·용도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위적·의도적으로 제조된 미세플라스틱을 말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

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한다. 가. “1차 미세플라스틱”이란 특정한 기능·용도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위적·의도적으로 제조된 미세플라스틱을 말한다. 나. “2차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을 말한다. 2.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안전 기준 또는 허용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수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는 미세플라스틱을 모든 치수가 $0.1\mu\text{m}\sim 5\text{mm}$, 길이가 $0.3\mu\text{m}\sim 15\text{mm}$, 길이-지름 비율이 3 이상인 고체 폴리머 함유 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나노플라스틱은 $1\mu\text{m}$ 이하, 미세플라스틱은 $1\mu\text{m}\sim 1\text{mm}$, 대형미세플라스틱은 $1\sim 5\text{mm}$ 로 정의하고 있는 등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미세플라스틱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 사례나 정확한 규명이 없어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3조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일상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제품의 생산 등 그 사업활동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안 제3조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안 제4조 및 제5조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⁷⁾, 제4조⁸⁾ 및 제5조⁹⁾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미세플라스틱의 정의가 부재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인 미세플라스틱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이 선행된 이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안 제6조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의 저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의 저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의 저감·관리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 해류, 자외선 등에 의해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발생한 2차 플라스틱임을 고려할 때,

현행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의 폐기물 유출금지 및 조치명령 등의 규정과 중복적으로 적용되거나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조 및 제8조)

안 제7조는 환경부장관이 ①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미세플라스틱이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③ 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④ 홍보 및 인식제고에 대한 사항, ⑤ 민관 협력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⑥ 재원규모와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 장의 의견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는 내용임.

안 제8조는 ①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②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③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④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배출현황 및 전망
3. 미세플라스틱이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4. 미세플라스틱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플라스틱의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6.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대책 실시를 위한 민관협력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8.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 제8조(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관할구역 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이를 제9조에 따른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환경유해인자 사전감시 강화 중 ‘나노물질 및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고도화 중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관계부처 합동)에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류 순환이용성 개선,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계획(‘23, 관계

부처합동)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일회용품 감량, 대체 신산업 육성, 플라스틱 물질·화학적 재활용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원 파악부터 규제·관리·위해성 등 전주기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도별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계획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과 환경보건종합계획 간 비교]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종합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주체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주기	5년	10년
목적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억제 및 배출의 적정 관리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하여 국민건강 증진
포함사항	1.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배출현황 및 전망 3. 미세플라스틱이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4. 미세플라스틱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플라스틱의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6.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대책 실시를 위한 민관협력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8.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5)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제9조)

안 제 9조는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저감·관리 정책과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방향,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해결,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차관급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간사로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①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종합계획·시행계획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정책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향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
5.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제 정 안

6. 그 밖에 대책위원회가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된다.

⑤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¹⁰⁾에 따라 별도 위원회 신설 보다는 유사위원회 우선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다음과 같이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 조·수입 등의 금지(제10조)

안 제10조는 ①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②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배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0조(제조·수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1차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함되거나 함유된 1차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제품 2.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② 누구든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배출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함께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요인 또는 통상적인 사용 목적 범위에서 함께 사용되는

제 정 안

요소·요인 등으로 인하여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플라스틱을 원료·재료로 사용한 제품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③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입증¹¹⁾이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¹¹⁾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¹²⁾에 반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표준화된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령의 이행·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11)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기술수준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기준·방법 등이 미비한 상황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정안을 통해 보호하려는 환경오염의 피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려는 공익성에 비해 모든 플라스틱제품의 판매·사용 등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둘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바람·자외선·해류·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2차 미세플라스틱을 발생·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서도 미세플라스틱 발생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산업계 전반에 큰 제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셋째, 안 제10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약외품 등의 원료나 원재료는 「약사법」 및 관련 식약 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고시된 원료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미세플라스틱 원료나 원재료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고,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59호)」에서 세정제 및 세탁제 등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21.1”)하고 있으므로,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기준이 설정된 세정제, 세탁세제 등 안

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총 243개 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였으나, 2024년 10월까지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품목	조사제품 수	미세플라스틱 조사결과
합계	243	전 제품 불검출
세정제	114	"
제거제	23	"
세탁세제	65	"
표백제	11	"
섬유유연제	15	"

주. 미세플라스틱 기준이 설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23년부터 시행
자료: 환경부

넷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자가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임.

(7)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금지 및 조치명령 등(제11조 및 제12조)

안 제11조는 폐기물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나 해양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배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또는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1조(미세플라스틱의 유출 금지)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 제품에 포함·함유되어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 또는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된 2차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나 해양 등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호소 등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관할 하천·호소 등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미세플라스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 그 폐기물(이하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에 대하여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또는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③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이하 “해역관리청”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 그 폐기물(이하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④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거나 해저에 침적된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⑤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4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에 대하여 해당 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수거 기준과 수거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나 해양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안 제11조), 하천·호소 및 해양에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유출 폐기물을 수거(안 제12조)하도록 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첫째, 2차 미세플라스틱은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으로 사실상 모든 플라스틱제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의무자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수거조치 등을 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미 기존 법률에서 폐기물이 하천·호소 및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하천·호소 및 해양에 배출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해 조치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¹³⁾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¹⁴⁾, 제13조¹⁵⁾ 및 제14조¹⁶⁾에 따라 해안,

1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부유, 침적폐기물의 수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 「물환경보전법」 제31조¹⁷⁾ 및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면관리자 및 시·도지사 등은 플라스틱, 폐비닐 등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홍수 전·후 집중 수거·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해양, 하천 및 호소로의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실적으로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차단망 등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홍수기에 하천 및 하구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 효율을

-
-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7)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높이기 위해 하천 또는 댐수면에 차단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상황¹⁸⁾이나, 차단시설은 물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부유식으로 설치·운영 중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은 수거가 가능하지만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을 한정하여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오히려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까지 차단하는 유출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망이 유수 소통을 방해하여 홍수시 치수 등의 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기술상황을 고려할 때 미세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한 차단망 설치 가능 여부와 함께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홍수기에 하천·하구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초목류, 생활쓰레기 등)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천 또는 댐수면에 차단시설 설치·운영 중임.

(8)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등(제13조)

안 제13조는 제품 폐기에 따라 발생·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3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등) ① 제품의 폐기에 따라 발생·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1항의 재활용 및 그 밖에 자원순환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제조자, 수입업자 및 판매자로 하여금 미세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¹⁹⁾에

-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따라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재질의 제품·포장재의 경우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EPR²⁰⁾ 재활용 의무 대상과 제정안의 재활용 의무 대상이 중복되어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상과 EPR 대상 비교]

구분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상	EPR 대상
근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10조 및 제1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상	제품의 폐기에 따라 발생·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품 또는 포장재 제조, 수입, 판매업자 ※ 연매출 10억원, 연수입액 3억원 및 제품 출고·수입량 0.3~4톤 이상
품목 예시	○ 플라스틱을 원료·재료로 사용한 제품 - 건강기능식품, 생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	○ 플라스틱(합성수지), 종이, 유리 등 재활용 가능 재질의 제품·포장재 [포장재] - 음료수(식품, 건강기능식품, 식육가공품, 먹는물), 농수축산물, 세제류, 샴푸, 린스, 의약품, 종이팩, 유리병, 기타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 등 [제품] - 합성수지제품(산업용 필름, 정수기 필터, 안전망, PP 재질 생활용품, PVC 제품, 플라스틱 운반상자 등), 1회용 봉투,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식품 포장용 랍 필름, 전지, 타이어, 양식용 부자, 플라스틱 부자 및 김발장 등
의무	회수·재활용	회수·재활용

자료: 환경부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9)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제14조 및 제15조)

안 제14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15조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미세플라스틱 조사·연구,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국가 간 감시체계 구축, 자원 조성,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4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미세플라스틱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미세플라스틱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플라스틱 관련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플라스틱의 감시체계 구축

제 정 안
4. 국가 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6.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까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발생원인·전개과정·위해성 등에 대한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이나 거동·노출은 폐기물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 사전 준비 및 대응, 지속적인 관리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또한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초국경적인 미세플라스틱의 이동을 분석하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연구, 감시체계를 구축·관리하는 등의 사항은 한 국가나 일개 기관의 역량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세계 각국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저감·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재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하여 협약 본문에 미세플라스틱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2024년 말까지 협약 제정을 목표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약 조항은 미정인 상황임.

(10)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저감기술 지원 등(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

안 제16조는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배출경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및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임.

안 제17조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 등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술 개발 및 도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임.

안 제18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6조(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배출경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단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의 공동기획 및 협동 연구개발 관리
3. 미세플라스틱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그 밖에 미세플라스틱 발생·배출의 저감과 위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연

제 정 안

구개발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관하여 그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도입 지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 등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공학·환경보건학·분자생물학·병리학·식품학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 저감기술의 도입 지원, 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저감 및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6조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미세플라스틱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연구개발 전문기관과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의 업무영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도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역시 미세플라스틱 관련 R&D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미세플라스틱 전과정 통합관리 연구 로드맵]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발생 원 관리 및 저감 방안	정수처리시설 미세플라스틱 발생특성 및 관리방안					
	하수 MPs 발생특성 조사	열분석기반 하수처리시설 미세플라스틱 배출특성 조사				
	MPs 배출원 분류체계 구축	하수처리시설 초미세플라스틱 배출특성 조사				
		하수처리시설 유입 미세플라스틱 최적 제어방안				
	비점오염원 기인 담수 유입 특성	도시 비점오염원 발생 미세플라스틱 저감방안				
		고농도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폐기물 처리과정 중 초미세플라스틱 배출 모니터링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제어 방법 연구				
		미세플라스틱 오염 억제를 위한 폐플라스틱 관리 고도화				
	브레이크 재질에 따른 발생원인 분석 및 저감방안					
		다양한 타이어의 마모입자 중 미세플라스틱 발생특성 및 저감방안				
		토양·지하수 중 미세플라스틱 환경관리 방안 연구				
분석 표준화 및 고도화	먹는물 중 미세플라스틱 라만 표준분석법 마련					
	열분해법 기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담수 및 퇴적물 중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토양 FT-IR 분석법	토양·지하수 중 초미세플라스틱 라만 분석법 마련				
		토양·지하수 중 미세플라스틱 Py-GC/MS 분석법 마련				
	환경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방법 마련					
		폐기물 분야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환경 실태 및 거동 특성	먹는물 중 초미세플라스틱 분포 및 거동 특성 조사 연구					
	열분해법을 이용한 담수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조사					
		담수 환경 중 초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연구				
		미세플라스틱 매개 유해화학물질 탐색 연구				
	토양·지하수 중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FT-IR)	토양·지하수 중 초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토양·지하수 중 미세플라스틱 거동특성 평가				
	환경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시험방법 현장 적용성 평가 및 분포 특성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					
	초미세먼지 중 미세플라스틱 지표성분 특성 분석					
유해성 평가	비정형 미세플라스틱 생태노출 기법 마련			혼합노출 생태독성 예측모델 개발		
	MPs 제조방법 및 표준물질 개발			생물종(담수, 토양) 독성평가 및 독성기전 규명		
	비정형 미세플라스틱 유해특성 연구					
	육상환경 MPs 조사	인체 유해특성 평가 기반 구축		MPs와 환경오염물질 혼합독성 연구		
	미세플라스틱 표면 물리화학적 변화 특성 연구					
	미세플라스틱 독성영향 평가					
인체 모니 터링 및 위해성 평가	생체시료 분석법	인증표준물질 확보 및 교차분석		생체시료 중 MPs 안정성 평가		
	미세플라스틱 인체 모니터링 연구					
	미세플라스틱 생태노출 모델 및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MPs 생태독성 참고치 도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 모델 및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MPs 인체독성 참고치 도출					
	담수 중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연구					
	토양·지하수 중 초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평가 연구					

자료: 환경부

둘째, 안 제16조의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운영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경보전법」 제27조²¹⁾ 등과 같이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8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하려는 것이나 관리센터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환경보전법」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자료제출·검사, 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과태료(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안 제19조는 법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안 제20조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다만, 전문기관 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는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이나 해양폐기물 수거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기준 이상의 1차 미세플라스틱, 허용기준 이상의 2차 미세플라스틱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진열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9조(자료제출·검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 정 안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유출 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1차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유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2차 미세플라스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배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하천·호소 등에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에서 미세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거 조치 미이행을 점검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의무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비의도적인 2차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수거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와 관련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3호²²⁾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7조²³⁾에 따라 수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폐기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와 징역 및 벌금 간 처분의 차이가 크므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

22)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물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수거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비교]

법률	조항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3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21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처
02) 6788-5542

※ 참고자료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도입배경)** 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 대신 '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주요내용)**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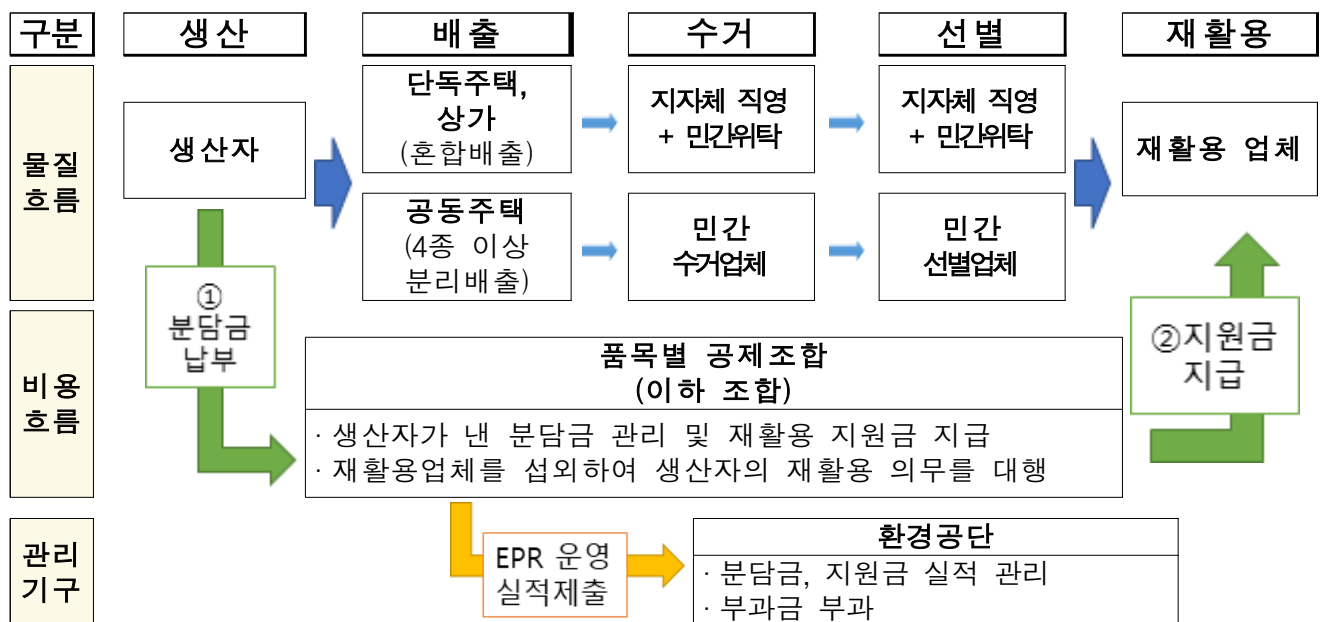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대상품목)** 자원재활용법상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품) 비닐 5종(뽁뽁이,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 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



□ 운영체제

- **(환경부)** 매 5년 주기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고, 이에 수렴하도록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를 설정 등 정책·제도 총괄
- **(환경공단)** 생산자가 제출한 출고·수입 실적 및 공제조합에서 제출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실적 확인 등 제도 운영업무 수행
- **(생산자)**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①공제조합에 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의무 공동이행하거나, ②직접 제품·포장재를 회수·재활용

*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액 3억원 이상 및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량 기준 이상인 제조·수입업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4)

- **(공제조합)**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분담금 산정방법 : 품목별 분담금 단가 × 출고량(생산량) × 재활용의무율

품목별 단가는 자원재활용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생산자, 재활용업체, 환경부 등)에서 재활용비용, 재활용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결정

※ 포장재의 경우 공제조합이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재활용지원금을 유통센터에 위탁, 유통센터에서 재활용업체 실적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부과금)**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미달성 시 미달성량에 비례하여 생산자가 분담금 외에 재활용부과금* 추가 부담

* 부과금 산정방법(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7)
: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비율(15~30%)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20/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2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30/100